



## 중국의 문화재 보호법규

정보신청기관 : 문화재청 정책과

### I. 중국 문화재 관련 법규 개관

중국은 오랜 역사만큼 현존하는 문화재의 양 또한 엄청나다. 중국의 문화재는 멀리는 북경원인 유적부터 가까이는 중국 혁명관련 문화재까지 다양하며, 중국 국무원은 1961년 108개의 제 1차 중요 문화재 보호단위를 지정한 이래 2006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2천 여 개의 문화재 보호단위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은 우리 나라의 부(部)에 해당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문물국(中华人民共和国 国家文物局)을 두어 문화재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재 관리 관련 법률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 文物保护法; 이하 ‘문화재보호법’ 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인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 文物保护法 实施条例; 이하 ‘실시조례’라 한다)가 있으며 이외에 문화

재 소장품 등급표준(文物藏品定级标准, 2001.4.9), 문화재 경매 임시규정(文物拍卖管理暂行规定, 2003.7.14), 문화재 해외반출 관리방법(文物出境鉴定管理办法, 1989.3.1), 문화재 보호 건축공정 관리방법(文物保护工程管理办法, 2003.5.1) 등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무형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2006년 12월부터 국가급 무형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保护与管理暂行办法)이 시행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주로 문화재보호법과 동 시행령을 중심으로 중국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법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중국 문화재보호법의 주요 내용

#### 1. 문화재보호법의 연혁

중국 문화재보호법은 1982년 제정된 것으로

1991년 소폭개정을 거쳐 2002년까지 시행되었으며 2002년 전체 33개 조문에서 80개 조문으로 대폭 개정되었고 이후 한 차례의 개정(2007년 12월 29일)을 거쳐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이르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총 8개장 8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

제3장 고고유적 발굴

제4장 소장단위 소장 문화재

제5장 민간소장 문화재

제6장 문화재의 해외반출 및 반입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 2. 총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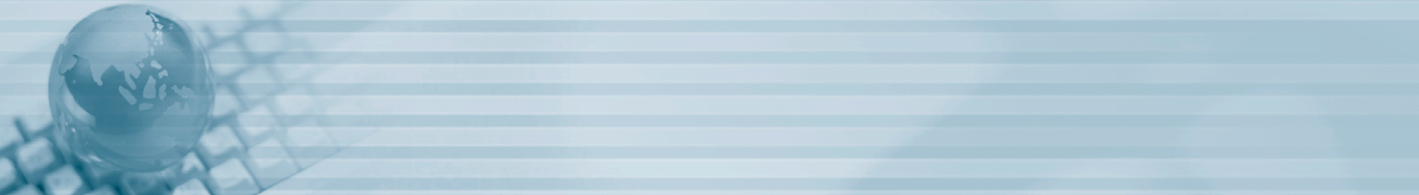
총칙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목적과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원칙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제1조는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 유산을 계승하며, 과학적 연구를 통해 애국주의와 혁명 전통의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정신 및 물질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본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재란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 무덤, 건축, 석굴사(石窟寺), 석각(石刻) 및

벽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혁명운동 혹은 저명 인사와 관련되거나 기념적, 교육적 의의 및 사료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사적, 물건 및 대표적 건축물, 각 역사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 및 공예 미술품,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헌, 친필원고(手稿), 도서 및 자료, 각 시대를 반영하거나 각 민족의 사회제도, 생산 양식, 생활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건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과학적 가치가 있는 고대 척추동물의 화석이나, 인류 화석도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러한 문화재 중 고대 문화유적, 무덤, 건축, 석굴사, 석각, 벽화 및 근현대 건축물 등이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不可移动的文物)는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에 따라 국가중점 문화재 보호단위, 성(省)급 문화재 보호단위 및 시(市), 현(县)급 문화재 보호단위로, 기타 물건, 예술품, 문헌, 친필원고, 도서자료 등 이동이 가능한 문화재는 진귀문화재(珍贵文物)와 일반문화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제3조).

한편 중국 국경내의 지하, 하천 및 영해에 존재하는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특히 문화재가 정착하고 있는 토지 소유권 혹은 사용권의 이전과 상관없이 국가에 귀속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전단). 또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라도 문화재보호 관련법규를 따르도록 하였다(제6조).

문화재 보호의무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 제9조 후단은 각급 인민정부(지방정부)의 문화재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  
문, 세관, 도시건설계획부문은 법률에 규정하는  
문화재 보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도시건설계획 수립시 문  
화재 보호를 계획에 포함함은 물론 필요한 경비  
를 재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제10조).

총칙편에서는 이외에도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  
문화재 보호단위의 사업수입과 국가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립한 기금은 문화재 보호 관련 업  
무에만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제10  
조), 국가의 문화재 보호 교육의무(제11조), 문  
화재 보호에 공헌한 단위나 개인에 대한 포상정  
책(제12조)을 규정하고 있다.

### 3.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

제2장은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의 보호 및 관  
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란 일반적으로 건축물 등 부동산을 가르  
키는 것으로 각급 인민정부의 문화재행정 보호  
단위가 비교적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선  
정하여 심사를 거쳐 국가중점 문화재 보호단위  
이하 각급 문화재 보호단위로 공포하도록 하고  
(제13조), 또한 다수의 문화재가 소재한 도시 전  
체를 국무원은 역사문화도시로 공포할 수 있도  
록 하였다(제14조 전단).<sup>1)</sup> 각급 문화재 보호단위  
는 당해 지역의 문화재 보호범위를 규정, 기록하

며 이를 전문기구 및 전문인력을 두어 관리하도  
록 하였다(제15조 전단).

건설과 관련하여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계획  
수립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전  
에 도시건설계획부문 및 문화재보호 주관부문과  
협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에 문화재보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제16조).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서는 폭파작업이나 굴착 등의 작업은 원칙적으  
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 문화재 보호단위가  
안전성을 조사하고 해당 인민정부의 비준 및 상  
급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시공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 성급 인민정부는 문화재 주변을 건설제  
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설작업을 제한할 수 있  
다(제18조 전단). 건설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경  
우 문화재 및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작업은 할 수 없고 만일 지정될 당시 이미  
진행되고 있던 공사가 있는 경우에도 기한을 두  
어 이를 정비하도록 하였다(제19조).

문화재 지역에 건축물을 시공할 때에는 가급  
적 문화재의 위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  
피할 경우 건설업체는 사전에 위치보존을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문화재행정 주관부문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문화재  
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해당 성급 인민정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급 문화재를 이전  
및 철거하는 경우는 국무원 주관부서의 동의를



1) 중국 국무원은 1982년, 1986년, 1994년 세 차례에 걸쳐 역사문화도시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을 포함하여 총 99개의 역사문화도시를 지정하였다.

언어야 한다. 위 절차에 근거하여 철거한 벽화, 조각(雕塑), 건축자재 등은 해당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이 지정한 소장기관이 소장하며, 위치보존이나 이전 및 철거비용은 건축단위가 건축비용으로 처리한다(제20조).

문화재의 보수나 유지비용은 사용인 혹은 소유자가 부담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 만일 개인이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가 직권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문화재 보수는 당해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 건축자격을 갖춘 단위<sup>3)</sup>만 시공할 수 있다(제21조). 만일 문화재가 멸실된 경우 유적을 보존하고 원위치에 재건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 성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원위치에 재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중점 문화재는 원위치에 재건축해야 하며, 역시 성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제22조).

한편 기념건축물이나 고건축물로 지정된 국유 문화재가 박물관이나 보관소, 관람장소로 개방하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현금의 문화재 보호단위가 당해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상급 인민정부의 동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성급 문화재 보호단위는 해당 인민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며, 국가중점 문화재는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3조).

국유 문화재는 양도하거나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박물관, 보관소 또는 관람장소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문화재 보호단위는 문화재를 자산으로 설정할 수 없다(제24조). 또한 국유 문화재가 아닐지라도 문화재의 양도 및 저당권 설정은 해당 문화재보호행정 주관부문의 심사 및 해당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모든 문화재는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25조).

#### 4. 고고유적 발굴

제3장은 고고유적 발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고고유적의 발굴은 관련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 없이는 어떠한 단위도 발굴할 수 없다(제17조).<sup>3)</sup> 발굴에 참여하는 단위는 국무원 문화재보호 주관부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중점 문화재의 발굴작업은 국무원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의 심사와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무원 주관부문은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과학연구기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제28조).



- 2) 문화재 보호작업 자격에 대해서 실시조례 제16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① 문화재 전문 기술자를 포함할 것, ② 문화재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률, 행정 법률법규가 정하는 다른 조건.
- 3) 실시조례 제20조는 고고유적 발굴단위의 자격에 대해서 ① 4명 이상의 고고유적 발굴 자격을 가진 인력이 있을 것, ② 문화재 전문 기술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있을 것, ③ 문화재 안전관련 전문인력이 있을 것, ④ 고고유적 발굴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구비할 것, ⑤ 문화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갖출 것, ⑥ 기타 법률 및 행정법률법규가 규정하는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형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설단위는 사전에 성급 인민정부의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의 고고유적 발굴단위에 신고한 후, 건축예정지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제29조 전단). 고고유적 발굴작업에 건설작업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성급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의 조사작업에 발굴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주관부문의 승인을 받는다. 자연 재해 등 긴급히 문화재를 발굴해야 하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의 주관부문이 발굴팀을 조직하여 발굴하고, 동시에 심사 및 승인 절차를 함께 수속한다(제30조). 건축공사 중 조사나 발굴작업의 비용은 건설단위가 부담하며 건설비용으로 처리한다(제31조).

건축작업이나 농업 활동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당해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에 신고하여야 하며, 주관부문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7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처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안과 협조할 수 있으며, 중요한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국무원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에 보고하고, 국무원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을 15일 내에 해당 문화재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제32조).

고고유적의 조사 및 발굴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무원 문화재행정 주관부문과 성급 인민정부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등록을 마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에 인도하거나 국유 박물관, 도서관 등 소장단위에 인도한다. 고고유적 발굴단위는 성급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의 승인을 얻어 출토된 유물의 일부를 연구용 샘플로 보유할 수 있다(제34조).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국무원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발굴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제33조).

### 5. 소장단위 소장 문화재<sup>4)</sup>

제6장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근거 문화재를 소장하는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소장단위(이하 '소장단위'라 한다)에 소장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장단위는 문화재의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급 이상의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을 해당 지역의 문화재의 자료를 관리하고 국가 1급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무원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이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제36조).

자료정리가 완료된 국유 문화재는 성급 문화재행정 관리부문의 비준과 국무원의 신고를 거쳐 소장단위 상호간 교환, 차용이 가능하나 1급 문화재는 국무원 문화재행정 관리부문의 비준을 요구하며 차용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제40, 41조).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문화재를 증여, 임대 및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4) 이 외에도 소장단위 소장 문화재에 관하여 <박물관 소장품 관리방법(博物館藏品管理方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제44조), 특히 문화재보호법 제49조는 특별히 문화재행정 관리부문의 공무원이나 소장단위의 직원들도 법에 의거하지 않고는 문화재를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의 교환, 차용 등을 실시하는 소장단위는 상호간 합리적인 범위의 보상을 할 수 있으며 이로서 발생하는 수입은 문화재의 보호 혹은 문화재 수집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제43조).<sup>5)</sup>

문화재의 복원에 관해서는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복제나 촬영, 탁본 등도 문화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제46조).

한편 소장단위는 국가가 규정하는 방화, 방범 시설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47조), 만일 문화재가 소실된 경우 성급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이 조사, 처리하고 국무원 주관부문에 보고하도록 하고, 1급 문화재는 국무원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였다(제48조).

## 6. 민간소장 문화재

민간소장 문화재는 국유가 아닌 문화재를 말하는 것으로 사인이나 법인 및 기타 조직도 상속, 수증, 구매, 경매, 합법적인 교환이나 양도, 기타 방식으로 문화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유통도 가능하다(제50조). 그러나 국유 문화재, 비국유 문화재 중 진귀문화재, 국유 문화재가 철거된

경우의 벽화, 조각, 건축 자재 등은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제51조).

민간소장 문화재의 두 축은 문화재 상점과 문화재 경매업체이다. 문화재 상점과 문화재 경매업체는 각각 성급 주관부문의 승인과 국무원 주관부문의 허가증을 취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며, 문화재 상점이 경매에 참여하거나 경매업체가 문화재를 매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53, 54조). 문화재행정 주관부문이나 소장단위의 국무원은 문화재 상점이나 경매업체를 설립할 수 없고, 또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도 엄격하여 3자기업, 즉 합자(合資), 합작(合作) 및 외자(外資)기업은 모두 문화재 상점이나 경매업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제55조). 만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조사 등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해태하여 문화재가 멸실 또는 유실되는 경우 및 뇌물, 횡령 등의 행위는 관련업체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76조).

문화재의 판매와 경매는 성급 주관부문의 심사 및 허가를 얻어야 하고 판매허가표시를 하도록 하며 판매와 경매 기록은 해당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제56, 57조). 또한 문화재 경매시 국유 문화재 소장단위가 중요 문화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지정할 수 있고, 가격은 소장단위와 위



5) 실시조례 제3조는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문화재의 보관, 보수, 수집, 국유 박물관, 기념관, 문화재 보호단위의 유지와 건설, 문화재 안전조치, 고고유적 조사, 발굴, 문화재 보호의 연구, 홍보,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탁인이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제58조).

또한 은행, 제련업체, 제지업체 및 폐품수집 업체는 각 지방 문화재행정 주관부문과 협조하여 수집품 중에서 문화재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제59조).

### 7. 문화재의 해외반출 및 국내반입

문화재의 해외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60조는 모든 국유 문화재와 중요한 비국유문화재 및 반출금지된 기타 문화재는 전시목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문화재를 전시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무원 주관부문이 지정한 심사기구를 통하여 심사하고 허가하는 경우 허가증을 발급한다(제61조 전단). 이때 1급 문화재가 국무원 주관부문이 규정하는 일정한 수량<sup>6)</sup> 이상인 경우 국무원의 비준이 필요하며 문화재가 파손, 훼손되기 쉬운 물품인 경우 해외전시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제62조). 허가증을 발급받은 문화재는 국무원 주관부문이 지정한 공항이나 항구를 이용하거나 운송, 우편 혹은 휴대의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만 반출을 허가한다(제61조 후단). 임시로 문화재가 국내로 재반입되었을 경우라도

반드시 세관 및 관련부문에 신고하여야 하고 재반출시에도 처음과 같은 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제63조).

### 8. 법률책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에 관련한 민사책임, 행정처벌, 형사책임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도굴, 고의로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 임의로 국유 문화재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중요 문화재의 외국인에게 판매 혹은 양도, 유통이 금지된 문화재의 매매행위, 무단으로 문화재를 가져가는 행위, 절도, 강탈 및 불법 점유, 문화재 관리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제64조) 본법의 기타 규정에 의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벌금부과 및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의 문화재관련 범죄는 형법 제324조~32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량이 매우 높다. 특히 국가중점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도굴집단의 수괴, 재범 및 중요 문화재를 파손한 경우는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형법 제328조 제1~4항)하였다.

한편 역사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문화재



6) 실시조례 제48조는 1급 문화재에 대해 총 수량이 120건 혹은 1급 문화재가 전체 전시품의 20%를 넘는 경우 국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실시조례 제49조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전시되지 않은 문화재는 해외에서 전시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분포, 환경 및 역사적 품모 등이 훼손된 경우 국무원은 역사문화도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역사문화촌(城鎮), 거리, 마을(村庄)의 경우에는 성급 인민정부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제69조).<sup>7)</sup>

또한 소장단위가 규정된 방화, 방범, 자연재해 대책을 미비하여 문화재에 손실을 입히거나, 소장단위의 책임자 이임 시 관련 자료를 규정대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국유 문화재를 기타 단체나 개인에게 증여, 대여, 판매하는 경우, 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 국유 문화재를 처분하는 경우, 타기관과 문화재 대여, 교환 등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지라도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법 소득은 몰수할 수 있다(제70조). 또 외국인과 관련된 경우에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벌금 부과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제71조).

### III. 평가

중국 문화재보호법의 지난 개정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등 처벌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둘째,

국가 단위가 아닌 문화재의 민간소유, 즉 개인 및 기타 조직의 문화재 소유를 인정하고 이를 규범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에 문화재에 대한 개인의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를 인정하면서 민간소유 문화재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 혹은 외국계 기업이 문화재를 반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중국 문화재보호에서 규정하는 중국 문화재 관리의 기본 골격은 해당 지방정부 주관부문의 관리와 국무원 주관부문의 총괄이다. 1급 문화재만 만여점이 넘는 중국의 현실에서 국무원 주관부문이 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따라서 성급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는 대신 국무원은 승인권한을 가지는 한편, 국가중점 문화재 및 1급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폐품업체의 협조나 건설업체의 의무를 세심히 규정하거나 역사문화도시 지정, 외국인의 문화재 반출을 엄격히 금지한 점은 중국의 과거의 경험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규정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 형법의 형량이 우리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높기는 하나 문화재관련 범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무기징역 및 사형을 규정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김 인 식

(중국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7) 실시조례 제19조는 문화재의 안전이나 역사적 품모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해 각급 인민정부가 조사와 처리의 권한을 갖는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